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8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김태선의원안)	3

I. 개요

1.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8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서비스는 저출생·맞벌이 시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많은 가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육아·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삶의 질과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34세 기혼여성 765만 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000명(15.9%)에 이르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 출산과 영유아 양육으로 크게 제약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거주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 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김태선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 공제(안 제104조의36 신설) ○ (적용대상) <u>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u> ○ (적용요건) 「<u>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 ○ (공제율 및 공제방식) <u>지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u> ○ (공제한도): 연 200만원

* 김태선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88)

□ 개정안은 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¹⁾ 및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음.

참고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등의 일과 가구 구성원의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함²⁾.

-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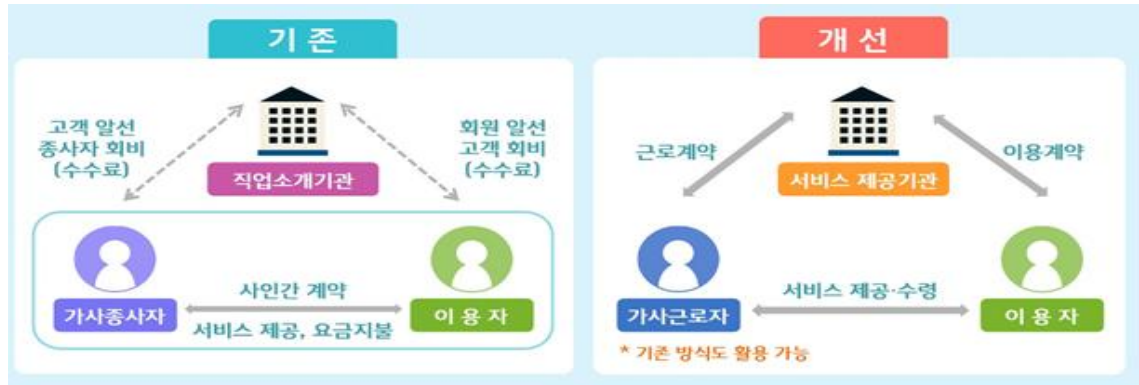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 직업소개기관의 소개 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자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 1847호), 2020. 9.]

□ 개정안은 근로소득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30% 세액공제(연 2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는 사인 간 계약을 통해 고용된 가사노동종사자보다 안정적인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해당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4대 보험료·퇴직금과 같은 노무비용이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될

한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므로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향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3.9%로 OECD 평균 67.1%에 비해 3.2%p 낮은 수준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단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한민국	58.3	59.0	59.4	60.0	59.1	59.9	61.8	63.1	63.9
OECD평균	63.5	64.0	64.5	65.1	63.5	64.6	65.8	66.6	67.1

자료: OECD(<https://data-explorer.oecd.org/>)

주: 15세~64세 여성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육아 부담, 가족 돌봄, 가사 부담 등은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여성이 출산·보육·육아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여성취업 장애요인(2023)]

(단위: %)

사회적 편견과 관행	불평등한 근로여건	구인정보 구하기 어려움	육아 부담	가족돌봄 (육아제외)	가사 부담	기타	잘모름
36.3	44.7	11.4	76.5	24.8	49.1	0.5	9.3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gsis/kr/>)

주: 복수응답 가능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있음.³⁾ 또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경비지출 증명 없이도 근로소득의 상당부분을 공제하는 개산공제방식의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를 차지하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⁴⁾의 경우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는 중위계층 이상, 또는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이 주 수혜대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에 내재된 역진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가사서비스 지출금액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4) 2022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690만 명(면세자 비율 33.6%)이며, 전체 면세자의 96.3%는 총급여 4천만원 이하자임.(자료: 국세통계연보)

셋째, 간병서비스,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신설되는 경우 다른 서비스와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영유아 양육 근로자 가구의 가사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재정 수입은 2027년 180억원 등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1,260억원(연평균 △3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세수추계 내역]

(단위: 억원)

세수효과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김태선의원안	△180	△360	△360	△360	△1,260	△315

문 의 처

02)6788-5149